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시보 공주시 GONGJU CITY

제664호 2018. 8. 16.(목)

【조 례】

제1181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1182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1183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1184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제1185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제1186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제1187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제1188호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4
제1189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 86
제1190호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8
제1191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4
제1192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1

【규 칙】

【훈 령】

제273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 103

【예 규】

【공 고】

제2018-1380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125
제2018-144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34

【고　시】

제2018-13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48
제2018-13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50
제2018-13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52
제2018-134호 쌍신일반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54
제2018-135호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78
제2018-141호 구계2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80
제2018-142호 유평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82
제2018-143호 중흥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84
제2018-144호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고시 ····· 186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1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웅진 6통란 다음에 “웅진7통”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웅진동	웅진7통	1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1동
		2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2동
		3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3동
		4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4동

		5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5동
		6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6동
		7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7동
		8반	771 금성백조예미지(아) 108동

별표 중 신관동 39통란 다음에 “신관동 40통”, “신관동 41통”, “신관동 42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아파트 동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40통	1반	101동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1동 101호~1802호
		2반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1동 203호~1805호
		3반	102동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2동 101호~2202호
		4반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2동 203호~2205호
		5반	103동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3동 101호~2302호
		6반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3동 203호~2305호
		7반	104동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4동 101호~1502호
		8반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4동 303호~1705호
		9반	105동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5동 201호~1702호
		10반		신관동 350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5동 203호~1905호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 명	아파트 동별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신관동	신관41통	1반	101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1동
		2반	102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2동
		3반	103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3동
		4반	104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4동
		5반	105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5동
		6반	106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6동 101호~2002호
		7반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6동 103호~2004호
		8반	107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7동
	신관42통	1반	108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8동
		2반	109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09동
		3반	110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코아루센트럴파크(아)1 10동101호~2002호
		4반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10동 103호~2004호
		5반	111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11동
		6반	112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12동
		7반	113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13동
		8반	114동	신관동 366-8번지 외 19필지 코아루센트럴 파크(아)114동

별표의 월송동란 중 “월송통”을 “월송 1통”으로 하고, 월송1통 다음에 “월송 2통”, “월송 3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 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월송동	월송 1통	1반	옹골, 양천재
		2반	전산, 다래울 일부
		3반	다래울
		4반	윗사송정
		5반	아래사송정
	월송 2통	1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1동 101호~412호
		2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1동 501호~812호
		3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1동 901호~1212호
		4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1동 1301호~1612호
		5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1동 1701호~2112호
		6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2동 101호~408호
		7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2동 501호~808호
		8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2동 901호~1208호
		9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2동 1301호~1508호
	월송 3통	1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3동 101호~410호
		2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3동 501호~810호
		3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3동 901호~1210호

		4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3동 1301호~1810호
		5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4동 101호~412호
		6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4동 501호~812호
		7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4동 901호~1212호
		8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4동 1301호~1612호
		9반	월송동 619, 공주월송LH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304동 1701호~201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2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3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기초연금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보 건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민 원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7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재 정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3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20조 『공주시시세기본조례』 제2조
	6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36조
	4	빈집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
	5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접수 및 현지 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7	농지에서의 불법개발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업경제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2	입산신고수리	
	3	산불예방 및 진화	
	4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조례』 제5조
	5	지원금액 30,000천원 미만의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6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	『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건 설	1	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	『도로법』 제23조
	2	보도 잡초 제거	『도로법』 제23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문 화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운영: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3	기초연금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민 원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2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재 정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3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징수법』 제32조
	5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수리	『건축법』 제36조
산업경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4	자경증명 발급(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50조
	5	입산신고수리(중학동 제외)	
	6	산불예방 및 진화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분 야 별	일련번호	건 명	근거법령
건 설	1	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	『도로법』 제23조
	2	보도 잡초 제거	『도로법』 제23조
환경관리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동 제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3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할”을 “관리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

단 중 “위탁받”을 “관리위탁받”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매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4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마열차”란 문화재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의 제목 “보칙 ” 을 “고마열차 운행” 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운행시간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운행시간, 노선 및 이용권 구매방법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고마열차의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고마열차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이용료 환급 기준) 이용료의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및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2. 환급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아동(보호자 1인당 최대 2명)

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액 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제25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마 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고마 열차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아동
개 인	3,000	2,000	1,000
단 체	2,400	1,600	800
※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서류(해당 신분증 등) 제시할 경우 면제 및 감면			

- 아 동 : 만 12세 이하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어 른 : 만 19세 이상
-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 단 체 : 20명 이상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5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옥 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공고하 는 광고물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22조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이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공주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가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지상권·임차권이 있는 사람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공주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의 외국어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조명・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조명・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여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거나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등)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다만, 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접수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면적 10㎡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면적 50㎡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30만원
- 면적 5㎡ 미만	5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6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7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5만원

- 면적 20㎡	5만원을 더한 금액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30만원
- 애드벌룬(공) 1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8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 면적 10㎡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10만원
- 2㎡ 이상 3㎡ 미만	20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29만원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35만원
다) 면적 5㎡	45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5,5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15,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연면적 5㎡ 이하	9,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0매당)	7,000원
거. 전단 (500매당)	3,000원
너. 전자게시대 (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18,000원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20,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10,0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3만원
- 0.5㎡ 미만		22만원
- 0.5㎡ 이상 0.8㎡ 미만		32만원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42만원
- 1㎡ 이상 1.3㎡ 미만		50만원
- 1.3㎡ 이상 1.6㎡ 미만		64만원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75만원
- 2㎡ 이상 2.3㎡ 미만		100만원
- 2.3㎡ 이상 2.6㎡ 미만		129만원
- 2.6㎡ 이상 3.0㎡ 미만		130만원
라) 연면적 3㎡		15만원을 더한 금액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8만원
- 0.5㎡ 이상 0.8㎡ 이하		12만원
- 0.8㎡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25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 1.6㎡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58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 2.6㎡ 이상 3㎡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미만		8만원
- 1.1㎡ 이상 2.0㎡ 미만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 3.7㎡ 이상 4.5㎡ 미만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42만원
- 6㎡ 이상 8㎡ 미만		58만원
- 8㎡ 이상 1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3.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4.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6.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7.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8.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 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경사항	⑲ 비고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위치	⑫ 표시기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번호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현수막 등 신고수리 검사인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공 주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의 규격	⑩ 검사일자	⑪ 검사구분	⑫ 검사결과	검사자			⑯ 비고
		③ 성명	④ 업소명	⑤ 주소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 대장

① 번호	② 일시	③ 허가신고번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고
			④ 성명	⑤ 업소명	⑥ 전화번호	⑦ 주소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광고내용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5항호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210x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6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7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 중 “등록하여”를 “등록(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1호「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조례」를「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으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 “감면율은 100분의 100”을 “감면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

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8호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

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주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3.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을 갖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과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과장과 납세자보호관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백만 원 이상의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알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과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과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
2. 세무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제23조(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충민원과 별도로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를 필요한 경우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 과제의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과장에게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1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정 등)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
2.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과장의 의견
2. 사실확인 결과 등
3.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89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3조(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

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 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90호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및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박찬호골목길과 그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찬호골목길”이란 공산성과 산성시장을 잇는 지역에 박찬호 선수가 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조성된 제5조 제1항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마을해설사”란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분과에서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관광문화 교육을 이수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박찬호골목길(이하 "박찬호골목길"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박찬호골목길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박찬호골목길의 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46-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활성화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찬호골목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통한 박찬호골목길의 활용계획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
3.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골목길투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박찬호골목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박찬호골목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박찬호골목길에 설치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 박찬호 기념전시관

2. 체험관 : 야구체험관

3. 그 밖의 시설 : 박찬호 조형물,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등

② 박찬호 기념전시관, 야구체험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③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도심활성화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박찬호골목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체험장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공주시 물품관리 조례」,「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찬호골목길 시설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별표]

야구체험장 이용료(제8조 관련)

○ 베팅, 피칭 요금

구분	이용요금(원)	비 고
베팅머신(10개)	1,000원	제한시간 10분
피칭머신(10개)	1,000원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91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문화예술촌(이하 “문화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공주시 봉황로 134에 둔다. 다만,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

해서 명칭과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활성화계획)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촌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을 위한 오픈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입주작가(공주시에서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작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① 문화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판매공간
4. 그 밖의 문화예술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제5조(운영 시간) ① 문화예술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전·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촌의 직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촌 입주작가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단장)
2. 도시재생지원센터장
3.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 신청) ① 시장은 입주작가들의 전시회 개최가 없는 기간에 한하여 사용 모집공고를 통해 문화예술촌을 개인 및 단체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모집공고에 응모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주문화예술촌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사용여부를 통보 한다.

④ 사용 기간은 1회 최장 15일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취소) 시장은 문화예술촌의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작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 년 입주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③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와 계약을 맺고 사용

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

2. 입주 기간

3.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입주계약에 필요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입주작가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

2. 전시회 또는 교류전에 필요한 비용

3.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재료비 등

4. 문화예술촌 활성화와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가 제12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예술촌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화예술촌의 운영현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입주작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문화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8. 6.)에서 의결된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192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감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8월 16일

공주시 훈령 제273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유통망” 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5. “관리부서” 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시 본청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4조(보안책무)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체계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시 본청: 공간정보업무담당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주무과장
3. 사업소: 사업소장
4. 읍·면·동: 읍·면·동장

②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시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부시장, 안전산업국장, 시민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수도과장, 토지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한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자

2. 보관책임자 부 : 업무담당자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시 본청 : 공간정보업무담당부서의 장

나. 직속기관 : 주무과장

다. 사업소 : 사업소장

라. 읍·면·동 : 읍·면·동장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기록 유지

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유통망을 설치·운영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조·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시 본청 : 공간정보업무담당부서의 장

   나. 직속기관 : 주무과장

   다. 사업소 : 사업소장

   라. 읍·면·동 : 읍·면·동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인터넷 등 외부 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마련

4.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5.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 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5.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및 파기
5. 그 밖에 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 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시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시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도지사와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시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시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23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 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 또는 분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 또는 불법이용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도지사

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2.「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5.「충청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6.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 제1호]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군사지도

	제 한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접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별표 제2호]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의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감독관은 제3호에 따라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서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감독관은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감독관은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담당관· 과·팀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감독관은 당직자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담당관·과·팀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담당관·과·팀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 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반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갖춰 놓아야 한다.

2)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제4호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소각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관리 부서	목록 작성일	시스템 명칭	레이어명	정보의 주요내용 (레이어설명)	구축 범위	데이터 구축 형태	최초 생성 일자	갱신 주기	최종 갱신 일자	공개 구분	비공개/ 공개 제한 근거	비고

1) 데이터구축형태 : Polygon, Point, Line 등으로 구분
2) 공개구분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작일시	제 목	형 태	관리 매체	수량 (건)	보호기간	보관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공 일시	자료 구분	내 용 (자료명)	자료 건수	제공 방법	열람.수령자		제공사유	비고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
신원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소속기관(단체)</td><td colspan="2"></td><td>직 책</td><td colspan="2"></td></tr>
<tr><td>요청자료</td><td colspan="6"></td></tr>
<tr><td>사용목적
및
활용계획</td><td colspan="6"></td></tr>
<tr><td>관리대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제공내역</td><td>제공자료</td><td colspan="5"></td></tr>
<tr><td>제공방법</td><td colspan="5"></td></tr>
<tr><td>제공기간</td><td colspan="2"></td><td>반납여부</td><td></td><td>반납일</td><td></td></tr>
<tr><td>보안대책</td><td colspan="5"></td></tr>
</table>

본인은 20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회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 2018-1380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정의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6조)

○ 성과평가의 실시 및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 자체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 8. 16. ~ 2018. 9. 10.(2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경영관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37 / FAX : 041-840-2306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경영관리팀 (☏ 041-840-203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6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한다.

② 성과관리는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시에 두는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의 자체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과거 2년간 성과결과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

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한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수립에 관한 심의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워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및 제출)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체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 2018 - 1446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속기관과 읍면동의 다양한 종합행정수요기능 강화와 종합행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수로 되어 있는 직렬을 복수로 책정하고,

○ 정책보좌기능에 대한 임기제의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시 의회 정원 범위 내 홍보팀 신설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및 팀 조정사항

○ 팀 신설사항 (+1)

정원관리 기관	부 서	현 행	개 편	증감 팀수	비 고
의 회	의회사무국	의정, 의사	의정, 의사, **홍보**	1	팀신설

나. 정원 변동 사항

(단위 : 명)

정원관리기관	부 서	기 존	변 경	증감인원	비 고
총 계		998	998	-	
본 청	기획담당관	23	24	+1	◦ 행정·세무 6 +1 ◦ 행정 6 △1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복수직렬로 조정 ◦ 행정 6 +1 : 임기제공무원(정책보좌) 정원 반영(←문화관광과)
	미디어담당관	19	19	-	◦ 위생 9 + 1 : 현원에 맞춘 정원 흡수 ◦ 행정 7 △1 : 과원에 따른 정원 조정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20	20	-	◦ 행정6 △1 : “관광사업” 분야 역할 축소에 따른 임기제 정원 조정 ◦ 행정7 +1 :문화예술기능강화를 위한 정원 반영
	산림과	20	20	-	◦ 행정·녹지 9 +1 ◦ 위생 9 △1 ↳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직렬 정원 조정(←유구읍)
	수도과	25	25	-	◦ 행정·공업 7 +1 ◦ 행정 7 △1 ↳ 부서 특징에 맞는 복수직렬로 조정 후 정원 이관(→월송동)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17	17	-	◦ 행정·시설 6 +1 ◦ 행정 7 △1 ↳ 의회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조정 ◦ 행정·속기 8 +1 ◦ 속기 9 △1 ↳ 승진최저연수 경과에 따른 정원 조정
직속기관	보건과	68	68	-	◦ 보건·의료기술·간호 6 +1 ◦ 의료기술6 △1 ↳ 보건소 내 종합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직렬 조정
	건강과	24	24	-	◦ 보건·의료기술·간호 7 +1 ◦ 의료기술 7 △1 ↳ 보건소 내 종합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직렬 조정
	농촌진흥과	22	22	-	◦ 행정·시설 7 +1 ◦ 기계운영 7 △1 ↳ 자연감소(공로연수)를 활용한 필요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절한 직렬 반영
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26	25	△1	◦ 행정·공업7 △1 ↳ 과내 과원에 따른 필요부서 이관 (→수도과)

	시 립 도 서 관	16	16	-	◦ 행정·사서 8 +1 ◦ 행정·사서 9 △1 ↳ 부서 현원에 맞춘 정원 조정
읍·면·동	유 구 읍	22	21	△1	◦ 행정 9 △1 ↳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직렬을 조정 후 이관
	탄 천 면	13	13	-	◦ 행정·세무·농업 6 +1 ◦ 행정 6 △1 ↳ 타 직렬의 종합행정 기회 부여, 면 종합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로 조정
	정 안 면	14	14	-	◦ 행정·녹지 6 +1 ◦ 행정 6 △1 ↳ 타 직렬의 종합행정 기회 부여, 면 종합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로 조정
	우 성 면	15	15	-	◦ 행정·세무 6 +1 ◦ 행정 6 △1 ↳ 타 직렬의 종합행정 기회 부여, 면 종합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로 조정
	사 곡 면	13	13	-	◦ 행정·시설 6 +1 ◦ 행정 6 △1 ↳ 부서 현원에 맞춘 정원 조정
	신 풍 면	13	13	-	◦ 행정·세무·농업 6 +1 ◦ 행정 6 △1 ↳ 타 직렬의 종합행정 기회 부여, 면 종합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로 조정
	옥 룡 동	16	16	-	◦ 행정·세무·농업 6 +1 ◦ 행정·사회복지 6 △1 ↳ 타 직렬의 종합행정 기회 부여, 면 종합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로 조정
	월 송 동	11	12	+1	◦ 행정 7 +1 ↳ 월송주택단지 내 대규모 입주에 따른 민원 해소 (←수도과)

다. 공무원 총 정원사항

□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9조 제1항 별표 3) : 998명 **(총 정원 변동 없음)**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958	1	6	51	251	288	225	136
개 정	**958**	**1**	**6**	**51**	**252**	**287**	**227**	**134**
증 감	-	-	-	-	+1	△1	+2	△2

○ 연구직 및 지도직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 행	998	528	17	171	56	226
개 정	**998**	**529**	**17**	**171**	**55**	**226**
증 감	-	+1	-	-	△1	-

라. 기타 조정 사항

○ 행정·녹지 6 ⇒ 행정·농업·녹지 6 (도시정책과) : 현원에 맞춰 삼복수직렬로 조정

○ 행정·사회복지 6 (금학동) ⇔ 행정·농업 6 (월송동) : 현원에 맞춰 복수직렬 조정

○ 행정·시설 8 (수도과) ⇔ 시설 8 (사곡면) : 부서 특성에 맞춰 필요한 직렬 상호 조정

○ 사회복지 8 ⇒ 행정·사회복지 8 (신풍면) : 부서 특성에 맞춰 필요한 직렬로 조정

○ 사회복지 9 ⇒ 행정·사회복지 9 (유구읍, 계룡면, 웅진동, 신관동) :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복수직렬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70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 041-840-2070)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3)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5)**	**529(1)**	**17**	**171**	**55**	**226(4)**	**21(2)**	**127(1)**	**78(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58(5)**	**520(1)**	**17**	**140**	**55**	**226(4)**	**21(2)**	**127(1)**	**78(1)**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3**	**1**	**2**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4**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6	6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2	2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5	11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8					8	1	3	4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2					2			2
지방행정·농업·녹지·환경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6급 소계	**252**	**148**	**4**	**39**	**14**	**47**	**5**	**28**	**14**
지방행정주사	64	49	2		5	8	1	2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12			12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8	6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9	5			1	13	2	7	4
지방행정·전산주사	3	3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8	5			3				
지방행정·농업주사	10	1		5		4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32	27	2		1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7	1	4	2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5	2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3	3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2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3	4		1	1	7	1	6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5			5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7급 소계	**287**	**172**	**3**	**37**	**14**	**61**	**5**	**34**	**22**
지방행정주사보	71	50	2	2	3	14	2	3	9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3	2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7	5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3			3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5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2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8	6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2	16		1	1	4	1	2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3	2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2			2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통신운영주사보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8급 소계	**227**	**117**	**4**	**43**	**6**	**57**	**5**	**33**	**19**
지방행정서기	43	25	3		1	14	1	6	7
지방전산서기									
지방세무서기	10	10							
지방사회복지서기	11	4				7	1	5	1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5	2		2	1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7	11			1	5		5	
지방행정·전산서기	2	2							
지방행정·세무서기	10	1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6	9				7		5	2
지방행정·사서서기	2				2				
지방행정·속기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7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1	3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20	14				6		4	2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간호서기	9			9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3	2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운전서기	7	7							
지방위생서기	2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2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9급 소계	**134(5)**	**53(1)**	**3**	**15**	**18**	**45(4)**	**5(2)**	**23(1)**	**17(1)**
지방행정서기보	22(5)	5(1)				17(4)	2(2)	9(1)	6(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5	2				3	1	1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3	2				11	1	2	8
지방행정·사서서기보									
지방행정·공업서기보	3	1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1		5		5	
지방행정·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서기보	8	6		1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지방운전서기보	23	17	1	2	3				
지방위생서기보	7	2		1	4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지방기계운영서기보									
지방사무운영서기보	9	3		2	3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연구직 계	**7**	**6**		**1**					
지방학예연구사	4	4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2			2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별표 4]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2항 관련)

(단위: 명)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무분야
		소계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미디어담당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	도시정책과		소계	건강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계	문화시설사업소		
총 계	15	10	1	1	1	1	3	1	2	1	3	1	1	1	1	1		
일반직 소계	15	10	1	1	1	1	3	1	2	1	3	1	1	1	1	1		
5급 소계	2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1										기업유치 1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의료분야 1
6급 소계	4	2	1		1						2		1	1				
지방행정주사	2	2	1		1													정책보좌 1 시정홍보 1
지방행정·농업주사	2										2		1	1				농산유통지원 1 한우브랜드육성 1
7급 소계	5	4				1	1		2						1	1		
지방행정주사보	3	2				1	1								1	1		축제 1 평생교육사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1									도시조경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1									공공디자인 1
8급 소계	3	3		1			2											
지방행정서기	3	3		1			2											외국어 통역 1 평생학습 2
9급 소계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속기사 1

공주시 고시 제2018 - 13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0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23 (봉정동)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165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23 (봉정동)	2018.08.07	20100202	신축	절터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780-9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길 88-76 (신기동)	2018.08.07	20100112	신축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637	충청남도 공주시 효부길 12-27 (신기동)	2018.08.07	20100112	신축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2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3길 18-6 (신관동)	2018.08.07	20100112	신축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19-1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7-25 (금흥동)	2018.08.07	20100112	신축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58-25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큰길 1558-46 (검상동)	2018.08.07	20090825	신축	기존 도로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노동리 4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노동길 329	2018.08.07	20100112	신축	해당 자연마을 명칭칭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17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532-18	2018.08.07	20090825	신축	금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고유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54-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1길 45	2018.08.07	20100202	신축	남쪽에 있는 동원이 원골의 작은마을이라 하여 작은골1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29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성재길 15	2018.08.07	20100112	신축	성이 있었던 터가 현재도 남아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421-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부내로 309-16	2018.08.07	20120104	신축	냇물이 구불구불 흐른다 하여 구부내라 불렸던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309-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상수문길 2-11	2018.08.07	20100112	신축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산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청소길 87-15	2018.08.07	20100112	신축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6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골길 36-29	2018.08.07	20120423	신축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2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막은대미길 3-8	2018.08.07	20100112	신축	성처럼 생긴 지형으로 둘러싸인 위쪽이 상성 또는 막은대미라 불려 막은대미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41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곡길 26	2018.08.07	20100202	신축	마을에 있는 골짜기가 티하나 없이 신선하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05-4, 107-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190	2018.08.07	20100202	신축	반포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반포초교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23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사기소길 12-41	2018.08.07	20100112	신축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분청사기를 만들던 곳으로 사기를 굽던 마을이라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5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석봉길 14-13	2018.08.07	20100112	신축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53-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길 106-5	2018.08.07	20100112	신축	오인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오인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18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촌길 98-7	2018.08.07	20100112	신축	북쪽에 마을이 있다하여 북촌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199-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97-2	2018.08.07	20100202	신축	정안면의 중심이 되었던 옛길로 중앙 자를 활용하여 정안중앙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604-2, 604-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월산길 170-7	2018.08.07	20100112	신축	월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59-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길 439-40	2018.08.07	20100112	신축	옥성리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하여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24-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길 318	2018.08.07	20100202	신축	대성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대성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1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아래안영골길 66-12	2018.08.07	20100112	신축	안영리 아랫편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아래안영골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49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대룡조평길 648	2018.08.07	20100112	신축	대룡리와 조평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두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공주시 고시 제2018 - 132호

도로명주소 여부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0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322-10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사는유후
여부전	여부법	여부전	여부법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에 2018. 08. 07. 고시 법 도로명주소조 제19의거 관계 공조있어거 다니서 주소로 유비기됩용.
- 공공치있거서 리하·있각상고 다에 재종 공사지 주소(소당해)에 변경치있거서 도로명주소로 여부합됩용.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에 건물번호관 여부은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19의거서 정한 절차거 따라 신청할 수 다습됩용.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7의제7항거 관계 경변 도로명이 고시된 날사터 3년이 해난 법거 여부할 수 다습됩용.

○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 부우 종전주소관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관 지세주소에 공조있어관 재종 공사지 치당된 주소로 한용.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3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38-1, 3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322-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322-10	2018.08.06	재건축에 의한 관련지번 추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25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25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안구굴미길 12-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평정말길 9-39	2018.08.06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공주시 고시 제2018 - 133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0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석봉길 14-13 외 6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5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석봉길 14-13	2018.08.07	건물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29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성재길 17	2018.08.07	재건축에 의한 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165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23	2018.08.07	재건축에 의한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199-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97-2	2018.08.07	재건축에 의한 말소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2, 627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5	2018.08.07	재건축에 의한 말소	
6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2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3길 18-8	2018.08.07	재건축에 의한 말소	
7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2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3길 18-6	2018.08.07	재건축에 의한 말소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쌍신일반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쌍신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다. 면 적 : 225,75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수도권과 경남권에 집중된 자동차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양시 및 당진시에서 추진중인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과 더불어 중부권 자동차 복합단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번지

나. 성명 : ㈜세종 대표이사 박순현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18년 ~ 2023년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6,587	1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6,204	11.9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45,613	33.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74,770	54.7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5,756	100.0	
산업시설용지	136,587	6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6,204	7.2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45,613	2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74,770	33.1	
지원시설용지	22,222	9.8	
공공시설용지	66,947	29.7	
주차장	2,072	0.9	주차장 1개소
유수지	4,261	1.9	유수지 1개소
도 로	25,022	11.1	중로 3개소
공 원	1,934	0.9	공원 1개소
완충녹지	33,658	14.9	완충녹지 4개소

나.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7.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	1,437 (3,209)	25,022 (31,260)	-	-	-	2	1,006	20,244	2	431 (3,209)	4,778 (31,260)
중로	3	1,240	23,228	-	-	-	2	1,006	20,244	1	234	2,984
소로	1	197 (3,209)	1,794 (31,260)	-	-	-	-	-	-	1	197 (3,209)	1,794 (31,260)

※( )는 금회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사업구역 외 소로3류(국지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3,209	중로1-4	대로2-2	일반	-		
변경	소로	3	2-2	6~15	국지도로	3,209	중로1-4	대로2-2	일반	-		
신설	중로	2	쌍1	19	집산도로	438	소로3-2-2	중로2-쌍2	일반	-		
신설	중로	2	쌍2	19	집산도로	568	중로2-쌍1	중로3-쌍1	일반	-		
신설	중로	3	쌍1	12	국지도로	234	중로2-쌍2	남측구역계 쌍신동 9-8	일반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쌍1	주차장	쌍신동 464번지 일원	-	증) 2,072	2,072		1개소

나. 공간시설계획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쌍1	공원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증) 1,934	1,934		1개소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	증) 33,658	33,658		4개소
신설	쌍1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증) 19,095	19,095		
신설	쌍2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쌍신동 2번지 일원	-	증) 9,233	9,233		
신설	쌍3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143-1번지 일원	-	증) 2,474	2,474		
신설	쌍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1-2번지 일원	-	증) 2,856	2,856		

다. 방재시설계획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쌍1	유수지	저류지	공주시 쌍신동 9-9번지 일원	-	증) 4,261	4,261		1개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생활용수(㎥/일)	공업용수(㎥/일)	용수공급량(㎥/일)
총 계	40.7	0	40.7
산업시설용지	32.7	0	32.7
지원시설용지	8.0	0	0.8

※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은 실수요 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단지 내 공업용수사용 및 폐수발생량 산정은 제외

나. 하수처리계획

구 분	생활용수량 (㎥/일)	유효수율 (%)	오수전환율 (%)	오수발생량 (㎥/일)	지하수 유입량 (㎥/일)	일최대 오수발생량 (㎥/일)
사업지구	40.7	83	90	30.4	3.0	33.4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합계
변압기용량(kVa)		6,194	5,328	11,522.0
	구성비(%)	53.7	46.3	100.0
최대전력수요(kW)		4,645	3,689	8,334.0
	구성비(%)	55.7	44.3	100.0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면적(㎡)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 고
합계		158,809	-	205	
산업시설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C30)	16,204	1회선/1,000㎡	17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45,613	1회선/1,000㎡	46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	74,770	1회선/1,000㎡	75	
지원시설용지		22,222	0.3회선/100㎡	67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총열수요량 (Gcal/년)	최대열부하 (Gcal/h)	비 고
산업시설용지		43,504	6.26	
	직접열사용량(Gcal/년)	28,360	-	
	간접열사용량(Gcal/년)	15,144	6.26	
지원시설용지		3,654	5.15	
합계		47,158	11.41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쌍신동	1	전	1,417	1,417	최명애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2	쌍신동	1-2	전	1,116	1,116	김태경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	우성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근저당권
								우성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지상권
3	쌍신동	1-3	전	2,200	2,200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4	쌍신동	1-7	임	3,457	971	국(국토교통부)				
5	쌍신동	1-8	임	664	664	국(건설교통부)				
6	쌍신동	1-9	임	1,541	1,541	국(건설교통부)				
7	쌍신동	2	답	4,450	4,450	조영복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8	쌍신동	3-1	구	1,101	1,101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공유자	이원례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55번길 25(태평동)		
9	쌍신동	3-2	답	1,372	1,372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공유자	이원례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55번길 25(태평동)		
10	쌍신동	3-3	답	198	198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공유자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11	쌍신동	4	대	1,507	1,507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12	쌍신동	4-1	임	77	77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3	쌍신동	4-2	임	105	105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4	쌍신동	5-1	답	2,975	2,975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공유자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15	쌍신동	5-2	답	1,197	1,197	오희록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			
16	쌍신동	5-6	천	417	417	국(재무부)				
17	쌍신동	5-7	답	526	526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공유자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	쌍신동	5-8	답	3,008	3,008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공유자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19	쌍신동	6-1	답	3,206	3,206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공주신관지점)	근저당권
20	쌍신동	6-2	잡	979	979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21	쌍신동	7-1	답	466	466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22	쌍신동	7-2	답	2,238	2,238	김번겸	서울 관악구 봉천동 239-1 호암생활관동관 307			
23	쌍신동	8	답	2,638	2,638	임헌임	공주시 옥룡동 280-8 백제맨션 107호			
24	쌍신동	9-1	답	2,122	2,122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합동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근저당권
								합동 새마을금고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7-20	지상권
25	쌍신동	9-5	전	1,114	1,114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6	쌍신동	9-6	천	473	473	국(국토교통부)				
27	쌍신동	9-7	전	479	479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8	쌍신동	9-8	전	456	456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9	쌍신동	9-9	전	1,339	1,339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30	쌍신동	424-6	천	18,060	1,675	국(국토교통부)				
31	쌍신동	443-1	제	7,722	2,404	국(국토교통부)				
32	쌍신동	464	임	6,068	5,143	국(기획재정부)				
33	쌍신동	산1-1	임	103,550	99,387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34	쌍신동	산1-4	임	973	973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35	귀산리	59	답	1,326	124	국(건설교통부)				
36	귀산리	62-4	임	22,215	1,421	청송심씨 광주부윤 공파선산 종회	선산군 선산읍 이문리 80-22			
					▶공유자	국(건설교통부)				
37	귀산리	62-7	임	516	516	국(국토교통부)				
38	귀산리	62-8	임	259	253	국(국토교통부)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9	귀산리	62-9	임	12	12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0	귀산리	62-11	임	1,187	1,049	국(건설교통부)				
41	귀산리	63-1	전	440	440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42	귀산리	63-2	도	192	192	최길동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43	귀산리	63-3	전	164	164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44	귀산리	63-4	전	26	26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45	귀산리	63-5	도	10	10	최길동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46	귀산리	63-6	전	173	53	국(건설교통부)				
47	귀산리	64	답	2,102	25	국(건설교통부)				
48	귀산리	64-1	임	901	561	청송심씨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선산군 선산읍 이문리 80-22			
					▶공유자	국(국토교통부)				
49	귀산리	64-2	임	138	138	국(건설교통부)				
50	귀산리	270-8	도	4,353	52	국(국토교통부)				
51	귀산리	274-2	천	18,298	85	국(건설부)				
52	귀산리	산22-5	임	26,748	26,121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3	목천리	82-10	답	251	251	장교순	공주시 쌍신동 373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산성동 187-19	근저당권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지상권
54	목천리	84-4	전	99	99	국(재무부)				
55	목천리	84-5	전	192	192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56	목천리	85-2	답	17	17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108동 1102호(신관동, 대동디숲아파트)			
57	목천리	88-2	전	287	287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58	목천리	88-3	전	153	153	이인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47 롯데캐슬루나아파트 116-802			
59	목천리	89-1	전	33	33	유성온천주식회사	대덕군 유성면 봉명리 480			
60	목천리	89-2	답	60	60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108동 1102호(신관동, 대동디숲아파트)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	목천리	89-3	답	496	496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2	목천리	90-3	답	460	460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3	목천리	90-4	답	169	169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108동 1102호(신관동, 대동디숲아파트)			
64	목천리	90-5	답	1,255	1,255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5	목천리	91-3	답	701	701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6	목천리	91-4	답	228	228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108동 1102호(신관동, 대동디숲아파트)			
67	목천리	91-5	답	1,432	1,432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8	목천리	92-2	답	400	400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69	목천리	92-3	답	218	218	국(재무부)				
70	목천리	92-4	답	1,200	1,200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71	목천리	92-5	잡	1,617	1,617	국(재무부)				
72	목천리	143-1	답	983	942	장교순	공주시 쌍신동 373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산성동 187-19	근저당권
								공주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길 19(금성동)	지상권
73	목천리	143-2	구	169	134	국(국토교통부)				
74	목천리	144-2	임	11,303	644	국(건설교통부)				
75	목천리	144-4	임	153	147	국(건설교통부)				
76	목천리	144-5	임	8,136	8,010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77	목천리	144-6	임	1,581	1,499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78	목천리	144-10	임	939	801	국(건설교통부)				
79	목천리	930-1	천	136,994	852	국(국토교통부)				
80	목천리	933-2	도	468	468	국(국토교통부)				
81	목천리	973-2	제	68,973	837	국(농림축산식품부)				
82	목천리	989	잡	1,190	1,190	국(재무부)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3	목천리	989-1	답	701	701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84	목천리	990	답	2,846	2,846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85	목천리	990-1	답	486	486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86	목천리	991	전	2,390	2,301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우성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근저당권
								우성농업협동조합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지상권
87	목천리	991-1	전	698	669	박영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5			
88	목천리	991-2	전	539	512	박영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5			
89	목천리	992	전	2,023	2,023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90	목천리	992-1	답	20	20	국(재무부)				
91	목천리	992-2	전	26	26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92	목천리	992-3	전	215	215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93	목천리	994	전	1,131	145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94	목천리	994-1	전	2,179	335	김종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59 신성천안미소지움아파트 106-1005			
95	목천리	995	잡	4,030	3,298	국(기획재정부)				
96	목천리	1017	천	25,066	2,514	국(국토교통부)				
97	목천리	1017-1	잡	1,993	952	국(재무부)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8	목천리	1019	제	23,118	415	국(국토교통부)				
99	목천리	1019-1	전	377	257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100	목천리	1069	구	6,225	1,375	국(국토교통부)				
101	쌍신동	0-4	가	-	698					

나. 수용·사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쌍신동	6-2	사무실	철골조 알루미늄 판넬함석	550	㎡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2	쌍신동	6-2	창고1	조립식 판넬함석	28	㎡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3	쌍신동	6-2	창고2	철골조 함석	154	㎡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4	쌍신동	6-2	관정		1	정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5	쌍신동	6-2	담장(목재)	H 1.5m, L 60m	1	식/m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6	쌍신동	6-2	담장(함석)	H 2.2m, L 15m	1	식/m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7	쌍신동	6-2	펜스	H 1.8m, L 15m	1	식/m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8	쌍신동	6-2	구상나무	H 2m	7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9	쌍신동	6-2	밤나무	H 5m	1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0	쌍신동	6-2	엄나무	H 3m	5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1	쌍신동	6-2	반송	H 1.5m	14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2	쌍신동	6-2	옻나무	H 2m	5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3	쌍신동	6-2	은행나무	H 10m	3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4	쌍신동	6-1	관정		1	정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5	쌍신동	6-1	인삼밭		1,768	㎡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6	쌍신동	6-1	밤나무	H 6m	25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연번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7	쌍신동	6-1	매실나무	H 1m	2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8	쌍신동	6-1	조경수	H 4m	4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19	쌍신동	443-1	관정		1	정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7번길 40-1(판교동)			
20	쌍신동	443-1	밤나무	H 4m	8	주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7번길 40-1(판교동)			
21	쌍신동	9-5	관정		1	정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2	쌍신동	9-8	관정		1	정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3	쌍신동	443-1	감나무1	H 3m	5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24	쌍신동	443-1	감나무2	H 5m	4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25	쌍신동	443-1	모과나무	H 3m	1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26	쌍신동	443-1	복숭아	H 4m	1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27	쌍신동	1-3	관정		1	정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28	쌍신동	1-3	감나무	H 4m	22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29	쌍신동	1-3	매실나무	H 4m	3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30	쌍신동	1-3	대추나무	H 2m	83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31	쌍신동	1-3	두릅나무	H 2m	70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32	쌍신동	1-3	옻나무1	H 6m	45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33	쌍신동	1-3	옻나무2	H 7m	15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34	쌍신동	1-3	옻나무3	H 4m	10	주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35	쌍신동	5-2	관정		1	정	오록희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			
36	쌍신동	1	밤나무1	H 5m	48	주	최명애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37	쌍신동	1	밤나무2	H 3m	13	주	최명애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38	쌍신동	1	대추나무	H 3m	2	주	최명애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39	쌍신동	1	백련초		60	㎡	최명애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연번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40	쌍신동	4	은행나무	H 12m	2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1	쌍신동	4	사철나무	H 1.5m	6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2	쌍신동	4	벚나무1	H 2m	1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3	쌍신동	4	벚나무2	H 4m	1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4	쌍신동	4	조경수	H 4m	2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5	쌍신동	4	느티나무	H 4m	1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6	쌍신동	4	매실	H 4m	1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7	쌍신동	4	장미	H 1.5m	2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8	쌍신동	4	뽕나무	H 4m	5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49	쌍신동	4	오동나무	H 5m	1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0	쌍신동	산1-4	울타리	그물망 H 1m, L 45m	1	식/m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1	쌍신동	산1-4	주택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93	㎡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2	쌍신동	산1-4	향나무	H 4m	2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3	쌍신동	산1-4	영산홍	H 1m	45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4	쌍신동	산1-1	울타리	그물망 H 1m, L 185m	1	식/m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55	쌍신동	4-2	철탑	NO.62/SF -38M	1	식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6	쌍신동	4-1	철탑	NO.61/SF -38M	1	식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7	목천리	992	콘테이너	3 * 3	1	동	김종한	충청남도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58	목천리	992	이동식 화장실	1인동	1	개	김종한	충청남도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59	목천리	992	조경수	H 4m	9	주	김종한	충청남도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60	목천리	993-1	기도원	목조아스팔트쉉글	2.7	㎡	공주구국기도원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3-1			
61	목천리	993-1	담장 (브럭)	H 1.5m L 16m	1	식/m	공주구국기도원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3-1			

연번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62	목천리	993-1	방범등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1	개	공주구국기도원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3-1			
63	목천리	991	사육장1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167.4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64	목천리	991	사육장2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216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65	목천리	991	사육장3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216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66	목천리	991	사육장4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221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67	목천리	991	사육장5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280.5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68	목천리	991	사육장6	파이프비닐 보온덮개	280.5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69	목천리	991	창고1	철골조립식 판넬	40.5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0	목천리	991	창고2	철골조립식 판넬	10.5	㎡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1	목천리	991	콘테이너 1	3*6.0	2	동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2	목천리	991	콘테이너 2	3*8	1	동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3	목천리	991	피드빈	10t	3	식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4	목천리	991	견사	철재 4.5*10	1	개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5	목천리	991	견사	판넬 1.2*1.2	1	개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6	목천리	991	밤나무	H 3m	1	주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7	목천리	991	배나무	H 5m	6	주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78	목천리	990	조경수	H 3m	250	주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79	목천리	1017	관정		1	정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80	목천리	930-1	은행나무	H 10m	4	주	공주시				
81	목천리	90-5	밤나무	H 3m	1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82	목천리	90-5	매실나무	H 3m	7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83	목천리	90-5	벚나무	H 3m	2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84	목천리	90-5	뽕나무	H 3m	2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연번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85	목천리	143-2	관정		1	정	한국농어촌공사				
86	귀산리	59	매실나무	H 3m	4	주	공주시				

다. 전력주조서

연번	리	지번	지장물명	전주번호	규격 (m)	단위	전력주 수량	전력지주 수량	소관청	비고
1	쌍신동	산1-1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	쌍신동	산1-1	전력주	죽당선63 R1L12	16	본	1		한국전력공사	
3	쌍신동	산1-1	전력주	죽당선63 R1L11	16	본	1		한국전력공사	
4	쌍신동	산1-1	전력주	죽당선63 R1L10	16	본	1		한국전력공사	
5	쌍신동	산1-1	전력주	죽당선63 R1L9R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6	쌍신동	443-1	전력주	죽당선63 R1L9	16	본	1		한국전력공사	
7	쌍신동	443-1	전력주	죽당선69 R1	14	본	1		한국전력공사	
8	쌍신동	443-1	전력주	죽당선63 R1L7)	14	본	1		한국전력공사	
9	쌍신동	443-1	전력주	죽당선63 R1L6	16	본	1		한국전력공사	
10	쌍신동	443-1	전력주	죽당선63 R1L5	14	본	1		한국전력공사	
11	쌍신동	443-1	전력주	죽당선69 R1L4R1	8	본	1		한국전력공사	
12	쌍신동	1-3	전력주	죽당선63 R1L4R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3	쌍신동	424-6	전력주	죽당선63 R10L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4	쌍신동	5-8	전력주	죽당선63 R10L4L1	8	본	1		한국전력공사	
15	쌍신동	산1-1	전력주	죽당선63 R10L5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6	쌍신동	산1-1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7	쌍신동	5-1	전력주	죽당선63 R10L6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8	쌍신동	3-1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연번	리	지번	지장물명	전주번호	규격(m)	단위	전력주 수량	전력지주 수량	소관청	비고
19	쌍신동	4	전력주	죽당선63 R10L8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0	목천리	933-2	전력주	죽당선63 R15L3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1	목천리	91-5	전력주	죽당선63 R15L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2	목천리	90-5	전력주	죽당선63 R15L5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3	목천리	88-3	전력주	죽당선63 R15L6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4	목천리	143-3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5	목천리	143-1	전력주	죽당선63 R15L7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6	목천리	1017	전력주	죽당선63 R17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7	목천리	989-1	전력주	죽당선63 R16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8	목천리	1019-1	전력주	죽당선63 R15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9	목천리	991	전력주	죽당선63 R1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30	목천리	991	전력주	죽당선63 R14L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31	목천리	990	전력주	죽당선63 R15L1H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32	목천리	990	전력주	죽당선63 R15L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라. 통신주조서

연번	리	지번	지장물명	통신주번호	단위	수량	소관청	비고
1	쌍신동	443-1	통신주	쌍신22좌5좌1	본	1	(주)KT	
2	쌍신동	443-1	통신주	-	본	1	(주)KT	
3	쌍신동	443-1	통신주	-	본	1	(주)KT	
4	쌍신동	443-1	통신주	-	본	1	(주)KT	
5	쌍신동	산1-1	통신주	-	본	1	(주)KT	
6	쌍신동	산1-1	통신주	-	본	1	(주)KT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8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쌍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 세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수도권과 경남권에 집중된 자동차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양시 및 당진시에서 추진중인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과 더불어 중부권 자동차 복합단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개요

○ 개발방법 : 쌍신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민간개발

○ 주요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나. 면적 : 225,756㎡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3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1,437 (3,209)	25,022 (31,260)	-	-	-	2	1,006	20,244	2	431 (3,209)	4,778 (31,260)
중로	3	1,240	23,228	-	-	-	2	1,006	20,244	1	234	2,984
소로	1	197 (3,209)	1,794 (31,260)	-	-	-	-	-	-	1	197 (3,209)	1,794 (31,260)

※( )는 금회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사업구역 외 소로3류(국지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3,209	중로1-4	대로2-2	일반	-		
변경	소로	3	2-2	6~15	국지 도로	3,209	중로1-4	대로2-2	일반	-		
신설	중로	2	쌍1	19	집산 도로	438	소로3-2-2	중로2-쌍2	일반	-		
신설	중로	2	쌍2	19	집산 도로	568	중로2-쌍1	중로3-쌍1	일반	-		
신설	중로	3	쌍1	12	국지 도로	234	중로2-쌍2	남측구역계 쌍신동 9-8	일반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쌍1	• 노선신설 B = 19m, L = 438m	• 산업단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2-쌍2	• 노선신설 B = 19m, L = 568m	• 산업단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3-쌍1	• 노선신설 B = 12m, L = 234m	• 산업단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소로3-2-2	소로3-2-2	• 폭원변경 B = 6m → 6 ~ 15m	• 산업단지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쌍1	주차장	쌍신동 464번지 일원	-	증) 2,072	2,072		1개소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주차장	• 위치 : 쌍신동 464번지 일원 • 면적 : 2,072㎡	•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주차수요 해소를 위해여 주차장 신설

2) 공간 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쌍1	공원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증) 1,934	1,934		1개소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공원	• 위치 :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면적 : 1,934㎡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공원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	증) 33,658	33,658		4개소
신설	쌍1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증) 19,095	19,095		
신설	쌍2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쌍신동 2번지 일원	-	증) 9,233	9,233		
신설	쌍3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143-1번지 일원	-	증) 2,474	2,474		
신설	쌍	녹지	완충녹지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1-2번지 일원	-	증) 2,856	2,856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완충녹지	• 위치 :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면적 : 19,095㎡	• 산업단지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쌍2	완충녹지	• 위치 : 공주시 쌍신동 2번지 일원 • 면적 : 9,233㎡	• 산업단지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쌍3	완충녹지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143-1번지 일원 • 면적 : 2,474㎡	• 산업단지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쌍4	완충녹지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1-2번지 일원 • 면적 : 2,856㎡	• 산업단지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쌍1	유수지	저류지	공주시 쌍신동 9-9번지 일원	-	증) 4,261	4,261		1개소

○ 유수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유수지	• 위치 : 공주시 쌍신동 9-9번지 일원 • 면적 : 4,261㎡	•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 유수지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쌍신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증) 225,783	225,78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①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225,783	• 쌍신 일반산업단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	1BL	41,677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2BL	45,613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3BL	16,204	공주시 쌍신동 9-1번지 일원	
	4BL	33,093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	6BL	10,31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2-5번지 일원	
	7BL	11,91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5번지 일원	

다)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	5BL	2,072	공주시 쌍신동 464번지 일원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5">1BL
4BL</td><td rowspan="5">산업
시설
용지</td><td>용도</td><td>• 허용용도
-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table><tr><th rowspan="2">허용업종</th><th>중분류</th><th>업 종</th></tr><tr><td>H52</td><td>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td></tr></table>•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건 폐 율</td><td>• 70% 이하</td></tr>
<tr><td>용 적 률</td><td>• 250% 이하</td></tr>
<tr><td>높 이</td><td>• 4층(20m) 이하</td></tr>
<tr><td>배 치
(건축한계선)</td><td>•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td></tr>
<tr><td rowspan="5">2BL</td><td rowspan="5">산업
시설
용지</td><td>용 도</td><td>• 허용용도
-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table><tr><th rowspan="2">허용업종</th><th>중분류</th><th>업 종</th></tr><tr><td>E383</td><td>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td></tr></table>•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건 폐 율</td><td>• 60% 이하</td></tr>
<tr><td>용 적 률</td><td>• 250% 이하</td></tr>
<tr><td>높 이</td><td>• 4층(20m) 이하</td></tr>
<tr><td>배 치
(건축한계선)</td><td>•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td></tr>
</table>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5">3BL</td><td rowspan="5">산업
시설
용지</td><td>용 도</td><td>• 허용용도
-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table><tr><th rowspan="2">허용업종</th><th>중분류</th><th>업 종</th></tr><tr><td>C30</td><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td></tr></table>•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건 폐 율</td><td>• 70% 이하</td></tr>
<tr><td>용 적 률</td><td>• 250% 이하</td></tr>
<tr><td>높 이</td><td>• 4층(20m) 이하</td></tr>
<tr><td>배 치
(건축한계선)</td><td>•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td></tr>
</table>

나) 지원시설용지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6BL
7BL</td><td rowspan="6">지 원
시 설
용 지</td><td>용 도</td><td>•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시설, 전시장 판매시설(시장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건 폐 율</td><td>• 60% 이하</td></tr>
<tr><td>용 적 률</td><td>• 300% 이하</td></tr>
<tr><td>높 이</td><td>• 5층(20m) 이하</td></tr>
<tr><td>배 치
(건축한계선)</td><td>•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td></tr>
<tr><td>색 채</td><td>•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의 기준을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채 권장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권장
- 강조색 : 제한 없음</td></tr>
</table>

다)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5BL	주차장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2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색 채	-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8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공주시 고시 제2018 - 135호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정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316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강다리기공원 조성,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 지역경관개선 : 정안중앙길 가로경관정비, 알밤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4. 사업비 소요액 : 5,472백만원(국비 3,830, 도비 218, 시비 1,424)

5. 사업 예정기간 : 2015년 ~ 2020년(6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면	리					
총 계 / 5필지						16,412㎡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정안	광정	283-7	대	992㎡	공주시	
				283-8	차	595㎡	공주시	
	강다리기 공원	정안	광정	283-2	답	5,174㎡	공주시	
지역경관개선사업	정안중앙길 중심가로정비	정안	광정	316	도	8,886㎡	국 (국토교통부)	
	알밤쉼터	정안	광정	110-4	전	765㎡	공주시	

9.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농촌진흥과 ☎ 041-840-8688)

공주시 고시 제2018 -141호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구계2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구계2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구계2리 일원

나. 면 적 : 217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등불마을 해피하우스 조성, 마을쉼터 경관정비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및 견학, 컨설팅, 산신제활성화, 제경비

4. 사업비 소요액 : 500백만원 (국비 350, 도비 45, 시비 105)

5. 사업 예정기간 : 2017년 ~ 2019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	리				
등불마을 해피하우스	유구읍	구계2리	274-4	답	1,795	구계2리마을회
	소 계				1,795	
마을쉼터 경관정비	유구읍	구계2리	409-1	잡	939	구계2리마을회
	유구읍	구계2리	409-2	잡	512	구계2리마을회
	소 계				1,451	

9.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농촌진흥과 ☎ 041-840-8912)

공주시 고시 제2018 -142호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유평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유평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유평1리 일원

나. 면 적 : 164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한림버들 목욕탕조성, 통뫼동산 정비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 소요액 : 500백만원 (국비 350, 도비 45, 시비 105)

5. 사업 예정기간 : 2017년 ~ 2019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	리				
한림버들 목욕탕 통뫼동산정리	계룡면	유평1리	685	대	538	유평1리마을회
	계룡면	유평1리	297	임	271	유평1리마을회
	소계				809	

9.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농촌진흥과 ☎ 041-840-8912)

공주시 고시 제2018 -143호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중흥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중흥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1리 일원

나. 면 적 : 302.3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농업폐기물 집하장, 수변공간 및 마을경관개선, 대교천 환경정비 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마을환경해설사,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 소요액 : 500백만원 (국비 350, 도비 45, 시비 105)

5. 사업 예정기간 : 2017년 ~ 2019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	리				
농업폐기물 집하장	의당면	중흥1리	454-1	임	232	사유지(구종모)
	소 계				232	
마을안길 꽃길정비	의당면	중흥1리	445-1	답	70	사유지(조충연)
	의당면	중흥1리	525-9	천	108	국유지
	소 계				178	
부처모랭이 조성	의당면	중흥1리	산77-1	임	18	사유지(이은춘)
	의당면	중흥1리	산76	임	26	사유지(구종모)
	소 계				46	
쉼터조성	의당면	중흥1리	624	구	5	국유지
	의당면	중흥1리	640	도	5	국유지
	소 계				10	
대교천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의당면	중흥리	455-2	천	209	국유지
	의당면	중흥리	456-1	답	129	국유지
	의당면	중흥리	454-5	임	49	국유지
	의당면	중흥리	561	구	10	국유지
	의당면	중흥리	562	도	57	국유지
	소 계				454	

9.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농촌진흥과 ☎ 041-840-8912)

공주시 고시 제 2018 - 144호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8년 08월 16일

공 주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비고
		만수면적 (ha)	총저수량 (천㎥)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금학	공주시 금학동 112-3번지 일원	2.6	100	87.5	11.2	공주시장	

2. 지정사유

·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댐마루 여유고 부족, 제방옹벽 균열 등이 발견됨에 따라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보수 보강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안전을 위하여 지정하고자 함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청(환경자원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저수지(금학수원지) 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저수지 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취수(배수)시설 등을 조작하거나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저수지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8. 08. 16

6. 문의처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041-840-8620), 환경자원과(041-840-8536)